

第33回  
(閉會中)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 4 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月14日(金) 10時15分  
場 所 小會議室

### 議事日程

1.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開議時協議의件
2.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開議時協議의件(議長提議) ..... 1面
2.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提議) .....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千相旭議員 外 5人 發議) ..... 2面

(10時15分 開議)

○委員長 李萬魯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새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종로구의회의 화합차원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한해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議案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 議長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994년 1월 10일 千相旭議員 외 5인의 議員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으

며 1994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 개의시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1.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開議時協議의件(議長 提議)
2. 第34回鍾路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0時17分)

○委員長 李萬魯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제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94. 1. 14 (금) 11:00 개회식 직후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차 본회의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千相旭議員 의 5人 發議)

(10時19分)

○委員長 李萬魯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千相旭議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이만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4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모두 다섯개 부분으로 첫째, 동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케된 이유는 우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 제4조2항에서는 부의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을 부의장은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소외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관할지역구의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

의장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각 구의회가 22개가 있는데 그 중 우리 종로구와 성동, 성북 3개구만이 부의장의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 제2조3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10인으로 늘리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5조에서 규정한 각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임 될 때까지 종전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시에는 의장이 각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하여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관례적으로 그리하고 있는 것을 굳이 명문화함으로써 의장이 단지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때로는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위원의 선임이 어려울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임위원 추천 및 개선시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원들간에 경미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우리 의원들의 신분상에 간과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발생 했을때, 우리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서 규정된 내용은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이나 의정활동상으로 과거를 예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신

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해 앞으로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1인의 선임과 우리구의회의원들의 신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동조례 제3조제2항1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1994. 1. 10.

제안자 : 천상욱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원간에 경미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의원 신분상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원 관련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

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과 부의장을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제외시켰으나,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따라서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상임위원 정수 1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하여 도시건설위원 현행 9명을 10명으로 하고자 함.

○ 제3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의원간의 사항이나 의원신분에 관하여 경미하나 간과 해서 안될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없거나 신속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원 관련사항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개정(안) :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3호 중 “도시건설위원회 : 9인”을 “도시건설위원회 : 10인”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제1호에 “라”목을 신설한다.

라. 제7조제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원관련사항에 관한 협의.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2항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항중...  
“각 위원 의견의 참작하여”...를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설치) 1~2(생략)</p> <p>3. <u>도시건설위원회 : 9인</u></p> <p>제3조(상임위원회의의적무와소관)</p> <p>①생략</p> <p>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운영위원회</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p> <p>①생략</p> <p>②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p> <p>①각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1년간 재임한다.</p> <p>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p> <p>①상임위원은 각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 개선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설치) 1~2(현행과 같음)</p> <p>3. <u>도시건설위원회 : 10인</u></p> <p>제3조(상임위원회의의적무와소관)</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제7조제2항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원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u></p>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p> <p>①(현행과 같음)</p> <p>②<u>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u></p> <p>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p> <p>①각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1년간 재임한다.</p> <p><u>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u></p> <p>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p> <p>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 개선한다.</p>

○委員長 李萬魯 千相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尹柱彩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柱彩 專門委員 尹柱彩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중 “및 부의장”을 삭제하여 부의장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므로 조례 제2조제3항의 도시건설위원의 정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운영위원회 직무 중 “라”목을 신설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이 아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원 관련 사항에 관한 협의”를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임기 만료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선임할 때까지 재임한다”를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10조제1항 중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구의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회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중 도시건설위원회 9인을 10인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경중과 양 및 형평을 고려하여 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민행정위원회 11인을 12인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설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이 아닌 의

원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한 것은 특정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본 조례 개정으로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의결을 뜻하는 것인지 단순히 협의로 끝나는 것인지 여부가 애매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의 관계 역시 애매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원 관련 사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의한 의원 개인적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의회에서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의안의 예비심사 기능인 운영위원회 협의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례 제5조 단서 조항 신설은 의회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10조제1항 중 “각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사 존중 차원과, 원활한 의정 방향에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개정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尹柱彩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委員! 말씀하십시오.

○羅在岩委員 羅在岩입니다. 질의방법을 지금 첫째 주요 골자가 네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지를 일괄로 할 것인지 하나 하나씩 첫째부터 질의 중결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서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洪承台委員! 말씀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제 의견 같아서 이것을 중요한 심도있는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지를 하나 하나씩 검토해서 나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하나 하나씩 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2조하고 4조하고 묶어서 상임 위원회의 9인을 10인으로 한다든지 시민행정을 11인을 12인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와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과 이것이 연계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조 5조 10조해서 羅在岩委員 말씀대로 4개 골자로 하되 먼저 어떠한 사안을 먼저 다루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炯述委員! 말씀하십시오.

○李炯述委員 尹柱彩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만약에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 10인이 된다 하였고, 시민행정위원회 11인은 12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22인입니다. 10사람하고 12사람, 의장이 안 들어가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전체가 22명 중에 의장을 빼고 나면 숫자가 한사람이 비는데 그것을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을 것입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柱彩 숫자가 빈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짝수가 되든지 시민행정위원회가 짝수가 되든지 어차피 어느 한 위원회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부의장이 상임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시민행정위원회에 11사람을 12사람으로 한다 22명입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었으니까 21명인데 22명을 한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洪承台委員! 말씀하십시오.

○洪承台委員 그것은 부의장님이 만일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주어서 10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토 중에는 시민행정위원회에다가 주어서 12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결국은 도시건설은 2개국이고 그렇게 복잡성이 덜 있는데 시민행정은 4개국에 민원실 공보실까지 있다는 대단한 분량을 갖고 있고 또 각 동을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尹柱彩 專門委員이 하는 시민행정의 형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李炯述委員! 말씀하십시오.

○李炯述委員 네사항을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제일 첫째 4조2항에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두도록 의장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千相旭議員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초대 제일 처음에 부의장, 의장을 그때 제일 처음 되었을 때 부의장이 상임위원이 되면 체통문제가 생긴다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갑론을박 해가지고 수 없이 얘기가 돼서 부결을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집어 넣을 때 종로구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의원들은 금방 저래 체통떨어진다고 하다가 또 저래가지고 이것 집어 넣어야 된다 쯤대없는 의원이 아니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답을하실 것인지 나는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더 진지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저는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처음 같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입법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3년동안 우리가 운영해 왔으면 지금까지 의장님 부의장님이 사실 우리 종로구 기초의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해 오는 중에는 그렇게 꼭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의 어떤 일을 편파적으로 위원들이 해서, 회의를 가지고 불이익을 가져왔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소위 鄭鍾九委員이 없으니까 전부 삭제시켰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손도손 화기애애하게 했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늘 강조했지만 의장, 부의장의 임무가 꼭 의회에 의안이 왔을 때만 검토하고 예산만 다루게 의장, 부의장을 뽑아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소위 내적인 것은 상임위원장들이 관장하는 것 국회나 지방자치는 더 일이 더 큰 것이고 외적인 면에서 경찰서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든가 이런 것에 우리 22명 의원을 소위 말하면 20명을 대리해서 두분이 좀더 민관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물심양면의 활동이 있었을 때 전체 22명의 의원이 빛나고 주민의 찬사와 의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큰 힘을 주력을 해도 다 못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별 지장도 없는데 꼭 불가결한 것같이 지금와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어떤 조례를 입법취지 하든지간에 심도있게 다루고 그것을 함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먼저 전체 위원들과 4월 13일에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의원들이 다시 소회의실에서 전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정초에 큰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그 보다 더 큰 우리 국내여비 조례라든지 그것은 놔두고 이것이 올라와서 나는 깜짝놀랐는데 이것은 좀 우리 운영위원들이 7명이 모였지만 좀더 심도있게 심사해서 이런 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조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웃음없는 정치 일번지의 의회와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李萬魯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委員! 말씀하십시오.  
○田永泰委員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7조2항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원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인데 그것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정체가 이루어지는데 또다시 그것을 무슨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직무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거론한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취지로 만들어 놔던 윤리위원회하고 상충되어서 그것이 또 모든 것은 법으로 조례로 개정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구속력이 있으므로서 법률이 효력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3년 동안의 모든 議員들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중에 특별히 무슨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는 소립니다. 議員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체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징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議員이 議員의 자격 박탈을 못하겠지만 한 달 정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뚜렷한 명분없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은 다시 토론시간에 거론합니다마는 副議長을 議長으로 한다는 제4조도 아마 제안의 대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지금 副議長님이 늘 얘기를 강조하는 모양인데 한 議員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만 그것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별 의미가 없고 또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22명의 議員의 토론을 거쳐서 꼭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그냥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토론을 저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議員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田永泰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洪承台委員 委員席에서 - 일례들 들어 동조 3조2항1호까지 섞어서 하는 거죠.)

○委員長 李萬魯 재청이 없으므로 또 토론하세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洪承台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동조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한 것은 제 생각같아도 우리가 議員으로서 議員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특별한 아주 사회적으로나 區議會에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는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議員을 성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동조 제3조2항1호에 대한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洪承台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委員 제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제3조제2항제1호의 과목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議會 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위의 부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議員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議員 신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부분적으로 경고라든가 주의 촉구라든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위원

회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동안 우리 議會가 구성된지 만 3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 議員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직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 관련사항에 관한 협의는 부결, 삭제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의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委員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57分 擧手表決)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수정동의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또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羅在岩委員 羅在岩委員입니다.

5조의 상임위원회 임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하고 있는 조례는 우리 자체내의 헌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내의 헌법이다. 그 헌법은 적어도 아까 田永泰委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다. 하여튼 정했다 하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상례가 되었고 지킴에 있어서도 전례를 우선 따릅니다. 영국같은 데는 헌법 없이 불문화 되어 가지고도 지금 수백년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구태여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가, 5조2항의 상임위원회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참 말은 맞는데 구태여 이것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어 왔고 만일 정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4月 15日 되면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어서 1개월 내에 선임되지 않을 때는 議長에게 책임을 묻는 다든가 그렇게 해서 1개월 내에 선임한다든가 이런 식의 만일 불인다면 그렇게 불인단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대로 통과를 해도 변동없이 해도 잘 운영이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羅在岩委員의 토론에 재청이 있습니까?

○羅在岩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1개월 내에 선임이 안될 때는 議長에게 책임을 묻는 무엇때문에 안됐다는 것 신설 조항이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없어도 가능한데 도대체 둘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萬魯 羅在岩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없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난 의회활동을 회고해 볼 때 사실상 본의 아니게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그러한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한건 한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해서 1년간 되어 있는 임기를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정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될 시에는 종전의 상임위원회 委員님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새로 선임될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千相旭議員님께 정말 감사의 사의를 표하면서 제5조 단서에 대한 신설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반대토론이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田永泰委員 田永泰委員입니다.

丁昌熙委員님의 말씀도 맞고 다 옳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成員이 안되는 먼저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만들어서 本會議에서 可決하는데 무슨 법률이 발효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밤낮 금과옥조 만들어 놓고 실천할 수 없는 법 조례개정은 제안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듣기에 참 좋은 案입니다. 그렇죠, 참 좋은 안이고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案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本會議에 안 나온 사람이 상임위원회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통과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本會議가 열리지 않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더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한 것은 자꾸 올려서 뭘 조례를 뜯었다 고쳤다 하지 말고 미국 정부의 200년 된 헌법이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무것도 개정 안해도 오늘날 최강의 나라고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고 복지사회 국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습관이 늘 무엇이 잘못돼서 법이 잘못돼서 조례가 잘못돼서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먼저 만들어진 法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최대한의 운영의 방법을 논의해서 운영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委員은 지금 제안하는 5조는 그냥 개정하지 않는 것을 반대토론 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田永泰委員님의 말씀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田永泰委員의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炯述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丁昌熙委員님의 얘기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田永泰委員님의 얘기도 들어봐도 지나간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것을 해가지고 표결을 부치기 전에 이것을 표결을 해놓으면 운영위원회의 묘미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양쪽 얘기가 다 철학적인 깊이가 담겨있는데 여기다 표결에 부쳐놓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토론을 더 합시다.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본인은 그렇게 원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제가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田永泰委員이나 丁昌熙委員님, 洪承台委員님 말씀들이 맞는 애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먼저 한번 그런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도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議長한테만 놔두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李炯述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운영위원 몇몇 되지 않는데 전부 다 통일되는…….

○李炯述委員 이 건은 합의 도출 합시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예, 沈載得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沈載得委員 李炯述委員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다만 상임위원회가 선임되지 않을 때는 선임될 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넣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田永泰委員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능한한 우리가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萬魯 沈載得委員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委員席에서 - 표결로 하

지 말고 합의 도출하자고 하니까, 이걸.)

(○羅在岩委員 委員席에서 - 그래서 말의 성찬같은데 서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차려놓은 상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인데 특별한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개정 또 뭐 하고 하느니 보다는 종전대로 두자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지금 새로 우리 同僚 議員님께서 改正條例(案)을 갖고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田永泰委員님 얘기하는 재청에는 철회를 하고 李炯述委員님 말씀대로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걸 도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羅在岩委員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李炯述委員 委員席에서 - 羅在岩委員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洪承台委員 委員席에서 - 그대로 하자는 거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거야. 羅委員은.)

○委員長 李萬魯 李炯述委員님에 지지를 한다는 애깁니다. 전체의 의견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표결하겠습니다. 田永泰委員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11時17分 舉手表決)

田永泰委員에 반대 의사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주십시오.

田永泰委員의 개의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는 6명, 찬성은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丁昌熙委員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내리십시오.

(11時19分 舉手表決)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리세요.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조, 제4조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沈載得委員!

○沈載得委員 아까 제4조에 田永泰委員이 말씀하실 때 “좋습니다”했는데 아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副議長님은 議長님을 적극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빠져고 결의해 가지고 약 1년이 되었는데 지금 새로 상임위원회 구성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田永泰委員님의 수정, 田永泰委員님의 개정안 반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沈載得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11時21分 舉手表決)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沈載得委員 말씀하십시오.

○沈載得委員 이것은 원안 통과를 해주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沈載得委員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沈載得委員의 원안 통과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11時21分 舉手表決)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사실상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각 의원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것은

議員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뜻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田永泰委員님이나 羅在岩委員님이 말씀하시듯이 일단 크게 악법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운용의 묘를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議員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어귀를 굳이 삭제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부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李萬魯 그러면 개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표결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11時24分 舉手表決)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3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4차 運營委員會를 산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委員長과 幹事が 협의하여 작성, 議長과 本會議에 報告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出席委員 7名

李萬魯 沈載得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田永泰

○出席專門委員

尹柱彩

○出席議員

千相旭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